

##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12. 13

다. 상 정 일 사 : 2004. 12. 13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부위원회 제1차 회의)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부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김영열

나.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연·예탁금,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함. (안 제4조)
-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 등에 용자하고자 함. (안 제5조)

-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각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함. 다만,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안 제6조)
-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설치 및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 관리관을 지정 하여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설한 조례안 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서 절차 및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 7. 붙임 :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순군통합관리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 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기금을 말한다.
2.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기금을 말한다.
4. “군 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설치) 군수는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으로 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연·예탁금
4.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5조 (통합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등

제6조 (통합기금에의 예탁)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

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총괄업무 담당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

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운용관(이하 “총괄운용관”이라 한다)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총괄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고나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